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일부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  -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,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·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
  -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, 치과의사 등의 의무로,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합니다.
3. 귀 협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안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## 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한방병원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치과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,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

주무관	이혜리	서기관	이준미	보건의료정책 과장	김국일	보건의료정책 관	전결 2021. 10. 17. 이창준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보건의료정책과-4983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06 팩스번호 044-202-3924 / [heal@korea.kr](mailto:heal@korea.kr) / 비공개(5)